

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(송두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3. 1. 17 .

발 의 자 : 송두영·김정택·김영철·한갑수
박영근·나정숙·황효진 의원(7인)

개정이유

-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효율적인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으로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위촉 근거 마련.(안 제4조)
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, 심의위원회 회의 일정을 개정함.(안 제5조~제6조)
- 연구활동비 지급시기와 활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별지서식을 재정비 함.(안 제8조~제11조)
-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재정비

개정규칙안 : 붙임

신·구 조문대비표 : 붙임

참고사항 : 붙임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제2항
- 현행규칙(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) : 붙임
- 기타 참고자료(의회비 편성지침 발췌자료)

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의원연구단체(이하“연구단체”라한다)라 함은” 을 “의원연구단체(이하“연구단체”라한다)란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운영심사위원회” 를 “운영심의위원회” 로 하고, 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“다만, 의장이 연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” 를 신설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, 제4항에서 제6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별지 제1호” 를 “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” 로 하고, “당해 연도 3월말까지” 를 “해당 연도 1월 말까지” 로 한다.

제7조중 “당해연도 10월말까지” 를 “해당 연도 10월말까지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당해연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” 를 “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” 로 하고, 제3항중 “범위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유인물비, 전산처리비용 등” 을 “자료수집비, 회의비, 전문가 자문 경비 등” 으로 하고, “정산기준” 을 “지출기준” 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중 “1회 지급은 연구단체에게 심의 결과를” 을 “1회 지급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” 로 하고 “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” 를 “중간보고서” 로 한다.

제11조 제목중 “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제출” 를 “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” 로 하고, 제1항중 “연구단체는” 을 “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” 로 하며, “당해 년도말” 을 “해당 연도 10월말까지” 로 한다.

「별표」를 별지와 같이 하고, 「별지 제6호」를 신설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,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한다.

제4조(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) 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,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의장이 연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조장·지급회수에 관한 사항
4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- ③ 안검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관련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단체 등록)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.

- ② 의원은 3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.
- ③ 연구단체 등록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연구활동기간) 연구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10월말까지로 한다.

제8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 의장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해당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, 연구주제,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,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연구활동비 지급기준 등)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여비, 자료 수집비, 회의비, 전문가 자문경비 등 「별표」 연구활동비 지출기준에 의한다.

- ②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,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, 1회 지급은 제8조 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, 2회 지급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
-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- ⑤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, 연구계획서의 충실도,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1.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
 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
 3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
 4.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
제10조(연구계획 등의 변경)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의원,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)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, 해당 연도 10월말까지 최종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활동비 정산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지출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“의원연구사례집”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연구 활동비 지출기준

(제9조제1항 관련)

비 목	지 출 기 준	비 고
인 건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 의한다. · 산출기준 : (월임금액 ÷ 22) × 고용일수 	수령증(영수증)등 증빙서류 첨부
여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 원 : 「안산시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」 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. ○ 연구원, 연구보조원, 보조원등 :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함. 	"
자료수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, 복사, 제본비 물품구입비 등 경비 	"
회 의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내용과 관련한 간담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 	"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활동과 연계된 전문가 자문경비, 강사료, 식비, 다과비, 그밖에 비용 등 ○ 연구활동에 소용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	"

○○년도 연구활동 (중간·최종) 결과보고서

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(중간·최종)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제출인		의원외인
연구책임자		의원
연구내용	주제	
	목적	
	연구활동추진사항	<별첨" 구체적으로 기재>
연구활동비	총액	금 천원
	집행액	금 천원 <별첨" 구체적으로 기재>
특기사항		

- 붙임 1. 연구활동(중간·최종)결과보고서 1부.
2. 연구활동비 정산서 1부.

년 월 일

안산시의회 의장 귀하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의원 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,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란</p>
<p>제4조(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① (생략) ②(생략)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. (신설)</p>	<p>제4조(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다만, 의장이 연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으며,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 5조 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 ②-③ <삭 제> ④-⑥ (생략)</p>	<p>제 5조 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 ② (현행 ④항과 같음) ③ (현행 ⑤항과 같음) ④ (현행 ⑥항과 같음)</p>
<p>제 6조(연구단체 등록)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. ② - ③ (생략)</p>	<p>제 6조 (연구단체 등록) ①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② -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 7조(연구활동기간) 연구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<u>당해연도 10월말까지</u>로 한다.</p>	<p>제 7조(연구활동기간)<u>해당 연도</u></p>
<p>제 8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의장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<u>당해연도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</u>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<u>범위안에서</u>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 8조 (연구활동비 지원) ① <u>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범위에서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9조(연구활동비 지급기준)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여비, 유인물비, 전산처리비용 등 [별표] 연구활동비 정산 기준에 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, 1회 지급은 연구단체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, 2회 지급은 <u>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</u>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한다.</p> <p>④ - ⑥ (생략)</p>	<p>제 9조(연구활동비 지급기준) ①<u>인건비, 여비, 자료수집비, 회의비, 전문가 지문경비</u><u>지출기준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u>연구활동 중간보고서</u>..</p> <p>④ -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1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제출)</p> <p>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, <u>당해 연도말까지</u>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연구활동비 정산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 11조(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)</p> <p>①<u>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</u>, <u>해당 연도 10월말까지</u></p> <p>② <u>지출기준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 표]</p> <p>연구 활동비 정산기준 (제9조제1항 관련)</p>	<p>[별 표]</p> <p>연구 활동비 지출기준 (제9조제1항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비 목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지 출 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 건 비</td> <td>○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기에 의한다. · 산출기준: (월임금액 ÷ 22) × 고용일수</td> <td>수령증 (영수증) 등 증빙서류 첨부</td> </tr> <tr> <td>여 비</td> <td>○ 의원: 「인산시의원 월정수당 규정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. ○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: 「공무원규칙」 별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함.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유인물비</td> <td>○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제본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전산처리비</td> <td>○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회 의 비</td> <td>○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임 차 료</td> <td>○ 공청회등을 위한 사설임차료, 가가임차료 등 각종 임차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교통통신비</td> <td>○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내교통비, 전산전화 사용료, 우편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기 타</td> <td>○ <신설> ○ 연구활동에 소요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 목	지 출 기 준	비 고	인 건 비	○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기에 의한다. · 산출기준: (월임금액 ÷ 22) × 고용일수	수령증 (영수증) 등 증빙서류 첨부	여 비	○ 의원: 「인산시의원 월정수당 규정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. ○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: 「공무원규칙」 별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함.	"	유인물비	○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제본비	"	전산처리비	○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	"	회 의 비	○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	"	임 차 료	○ 공청회등을 위한 사설임차료, 가가임차료 등 각종 임차료	"	교통통신비	○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내교통비, 전산전화 사용료, 우편료	"	기 타	○ <신설> ○ 연구활동에 소요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	"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비 목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지 출 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 건 비</td> <td>○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기에 의한다. · 산출기준: (월임금액 ÷ 22) × 고용일수</td> <td>수령증 (영수증) 등 증빙서류 첨부</td> </tr> <tr> <td>여 비</td> <td>○ 의원: 「인산시의원 월정수당 규정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. ○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: 「공무원규칙」 별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함.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자료수집비</td> <td>○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, 제본비, 물품구입비 등 경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회 의 비</td> <td>○ 연구내용과 관련한 간담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tr> <td>기 타</td> <td>○ 연구활동과 연계된 전문가 자문경비, 강사료, 숙박, 다과비 그밖에 비용 등 ○ 연구활동에 소요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 목	지 출 기 준	비 고	인 건 비	○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기에 의한다. · 산출기준: (월임금액 ÷ 22) × 고용일수	수령증 (영수증) 등 증빙서류 첨부	여 비	○ 의원: 「인산시의원 월정수당 규정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. ○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: 「공무원규칙」 별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함.	"	자료수집비	○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, 제본비, 물품구입비 등 경비	"	회 의 비	○ 연구내용과 관련한 간담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	"	기 타	○ 연구활동과 연계된 전문가 자문경비, 강사료, 숙박, 다과비 그밖에 비용 등 ○ 연구활동에 소요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	"
비 목	지 출 기 준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 건 비	○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기에 의한다. · 산출기준: (월임금액 ÷ 22) × 고용일수	수령증 (영수증) 등 증빙서류 첨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여 비	○ 의원: 「인산시의원 월정수당 규정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. ○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: 「공무원규칙」 별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함.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인물비	○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제본비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산처리비	○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의 비	○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 차 료	○ 공청회등을 위한 사설임차료, 가가임차료 등 각종 임차료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통통신비	○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내교통비, 전산전화 사용료, 우편료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타	○ <신설> ○ 연구활동에 소요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목	지 출 기 준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 건 비	○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「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기에 의한다. · 산출기준: (월임금액 ÷ 22) × 고용일수	수령증 (영수증) 등 증빙서류 첨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여 비	○ 의원: 「인산시의원 월정수당 규정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별표3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함. ○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등: 「공무원규칙」 별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함.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료수집비	○ 연구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, 제본비, 물품구입비 등 경비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의 비	○ 연구내용과 관련한 간담회, 토론회,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타	○ 연구활동과 연계된 전문가 자문경비, 강사료, 숙박, 다과비 그밖에 비용 등 ○ 연구활동에 소요된 비용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 6호] <신 설></p>	<p>[별지 제 6호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년도 연구활동 (중간· 최종) 결과보고서</p> <p>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(중간· 최종)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연구 단체 명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제 출 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의원 외 인</td> </tr> <tr> <td>연구 책임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의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 내용</td> <td>주 제</td> </tr> <tr> <td>연구 목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 활동비</td> <td>연구활동 추진사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별첨> 구체적으로 기재</td> </tr> <tr> <td>총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금 천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연구 활동비</td> <td>집 행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금 천원</td> </tr> <tr> <td>특기사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별첨> 구체적으로 기재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붙임 1. 연구활동(중간·최종)결과보고서 1부. 2. 연구활동비 정산서 1부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산시의회 의장 귀하</p> </div>	연구 단체 명		제 출 인	의원 외 인	연구 책임자	의원	연구 내용	주 제	연구 목적	연구 활동비	연구활동 추진사항	<별첨> 구체적으로 기재	총 액	금 천원	연구 활동비	집 행 액	금 천원	특기사항	<별첨> 구체적으로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 단체 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출 인	의원 외 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 책임자	의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 내용	주 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 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 활동비	연구활동 추진사항	<별첨> 구체적으로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액	금 천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 활동비	집 행 액	금 천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특기사항	<별첨> 구체적으로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